

「모바일 운전면허증」 전국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

□ 개 요

- 시범발급*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'22.7.28.(목)부터 전국 발급**
 - * '22년 상반기부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발급 중으로, 공공·금융기관, 편의점, 렌터카 업체, 병원, 선거, 시험(국가기술자격, 토익), 공항 탑승 수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
 - ** (시범발급) 2개 운전면허시험장, 14개 경찰서 → (전국발급)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

□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

- (개 념) 도로교통법*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·저장하는 운전면허증
 - *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'22.1.21)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음
 - ※ 이동통신사(PASS)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



- (발 급) 최초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,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
- (활 용)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,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,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
- (개인정보보호) 사용자(신원확인자)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

※ 예 : (편의점) 성인여부, (렌터카) 운전면허자격 정보, (공공기관) 주민번호, 성명

□ 협조요청

- '22.7.28.(목)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며,
 - 민원업무 등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시 신원 또는 운전자격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
-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① 육안확인하거나 ② 검증앱*(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)으로 신원확인

*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→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

- 검증앱 이용의 경우, 검증앱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* 필요

* 앱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, 원스토어)에서 '모바일 신분증 검증앱'을 검색 다운로드

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(예 :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·확인)이 필요한 기관·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(개발지원센터 ☎ 042-870-1499, dev.mobileid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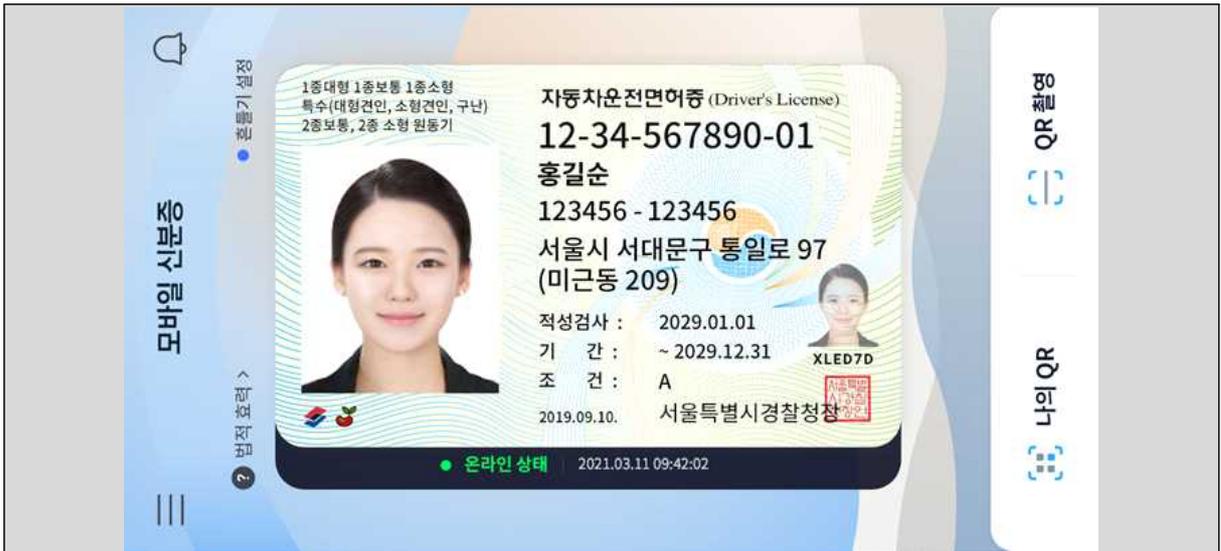
-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내 모든 부서,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(대민 업무부서, 민원실 창구 등 포함)
 - 각 부서는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소관 산하기관 및 협회·단체 등에 전파·안내하고, 협회·단체 등은 모든 회원사 및 현장 직원까지 전파 및 홍보·안내 당부

붙임1

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하는 방법

1 육안 확인

-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되,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이미지(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, 배경무늬 움직임) 확인 필요



2 검증앱 활용

-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,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(Wifi 등 연결필요)에 검증앱을 설치하여 검증기능 활용
- 특히, 민원창구 등 잦은 신원확인과 진위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태블릿과 QR리더기(블루투스 지원 제품) 구비 권장 (총 약 30만원 상당)



□ **설치방법**

- 앱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, 윈스토어)에서 '모바일 신분증 검증앱'을 검색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·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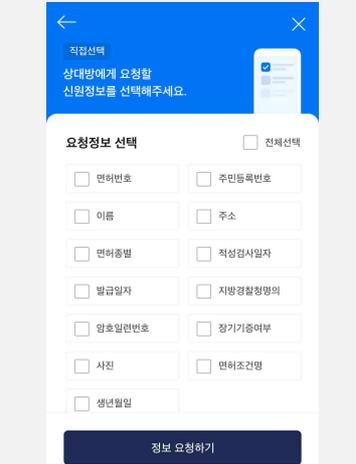
□ **사용방법**

- 검증앱의 'QR촬영하기' 기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촬영 - 'QR촬영하기' 기능 대신 'QR리더기'를 연결하여도 QR인식이 가능하며, 이 경우 편의를 위해 블루투스 리더기 활용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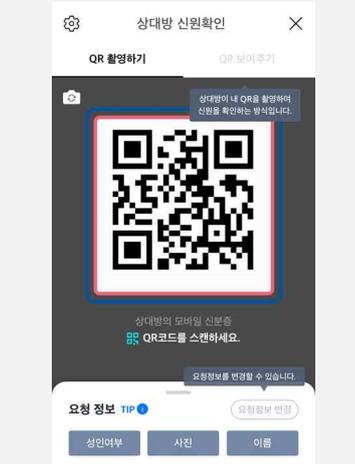
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확인자) 검증앱 'QR촬영하기'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② (고객·민원인) 「모바일 신분증앱」에서 승인 ③ (확인자)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

□ **사용절차**

- ① 검증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, ② 'QR촬영하기' 또는 연결된 'QR 리더기'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, ③ 민원인(고객)이 승인 후, 진위확인된 정보가 검증앱에 표출



① 신원확인할 정보 선택



② 고객·민원인의 QR 촬영



③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

□ 검증앱의 진위확인절차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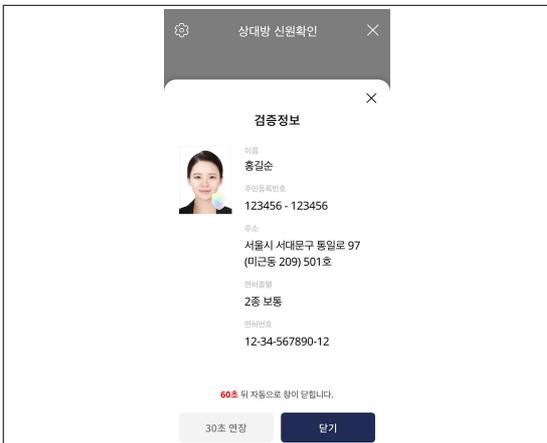
신원확인자(창구직원 등)



① 신분증 요청



③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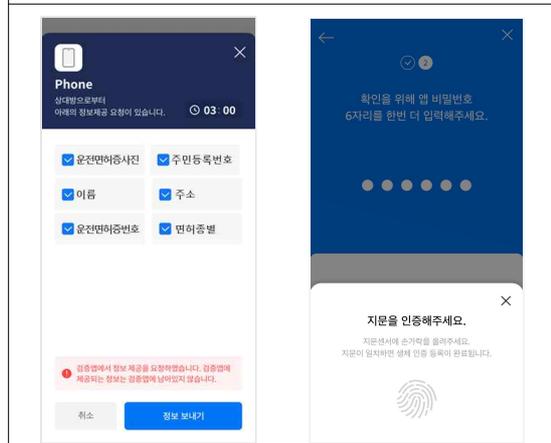


⑤ 진위 확인된 신원정보 확인

모바일 신분증 소지자



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



④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보내기

□ **도로교통법 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**

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②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

□ **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**

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
2.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, 이하 “영문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
3.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**모바일운전면허증(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, 이하 “모바일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**

제78조의2(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)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(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)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**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**

④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(IC, Integrated Circuit) 칩을 포함할 수 있다.

⑤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
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·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